

광명시 시민의 날 조례

제정 1981. 7. 1 조례 제 3호
개정 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제1조(목적)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정)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.

제3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